

# 정 정 신 고 (보 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간이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 년 5 월 20 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 · 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 사항	아니오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u> <u>호되지</u> -----
요약정보				
투자위험등급	아니오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5등급->4등급)	투자위험등급 <u>5등급</u> [낮은 위험]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u>5등급</u>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위험등급 <u>4등급</u> [보통 위험]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u>4등급</u>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아니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사항 반영(종류S 관련 정의 개정)	온라인 슈퍼(S)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생략)</u>	온라인 슈퍼(S)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종류S-T 및 S-P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것으로서 다른 종류(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 보다</u>

				<u>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 구입니다. (현행과 동일)</u>
--	--	--	--	--

# 정 정 신 고 (보 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 년 5 월 20 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 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 사항 및 투자설명서 전반	아니오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아니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사항 반영(종류S 관련 정의 개정)	온라인 슈퍼(S)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생략)</u>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종류S-T 및 S-P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것으로서 다른 종류(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현행과 동일)
			종류 S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u>	종류 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종류S-T 및 S-P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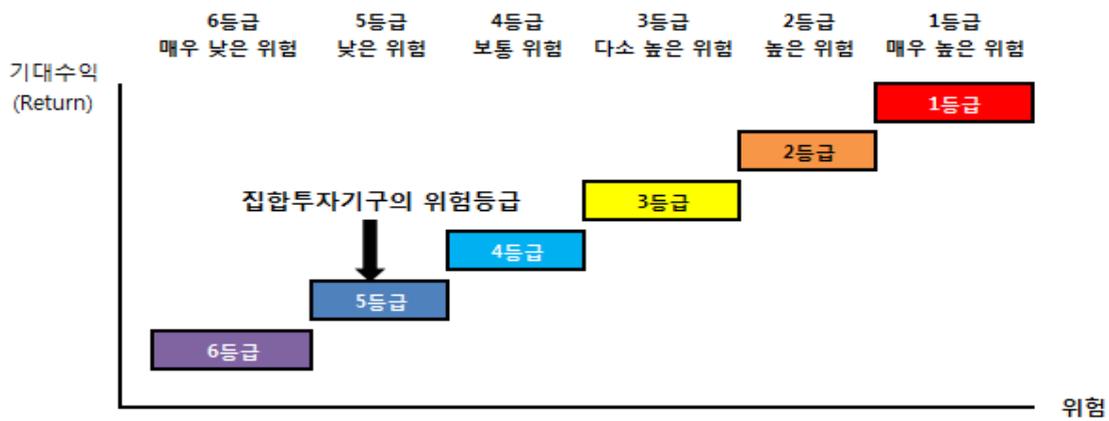
		<p><u>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u>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p>	<p>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p>
		<p>종류S-P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u>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p>	<p>종류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종류S-T 및 S-P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p>
		<p>종류S-I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u>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고액투자자자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p>	<p>종류 S-I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종류 S-T 및 S-P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p>

				고액투자자사용에 해당하는 집 합투자증권
표지/요약정보				
투자위험등급	아니오	최근 펀드결 산에 따른 위험등급 변 경(5등급->4 등급)	투자위험등급 <u>5등급 [낮은 위험]</u>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u>5등급</u> 으 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위험등급 <u>4등급 [보통 위험]</u>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u>4등급</u> 으 로 분류하였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 의 연혁	아니오	연혁추가	-	2024.10.4 - <u>최근 펀드 결산에 따른 투 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최근결산일 기준 이전 3 년 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gt;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 실 예상액: 97.5% VaR 모형)</u> 및 <u>투자위험 등급 변경(5 등 급-&gt;4 등급)</u> - <u>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사항 반영(종류 S 관련 정의 개정)</u> - <u>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 명,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u> - <u>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 영 등</u>
10.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 기구에 적합한 투 자자 유형	아니오	투자위험등급 및 산정기준 변경	투자위험 등급 : <u>5등급 낮은 위험</u> ※ <u>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3 년간 실제 주간 수익률의 변 동성(연환산) : 4.70%</u> 이 집합투자기구는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투자위험 등급 : <u>4등급 보통 위험</u> ※ <u>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 실 예상액 : 10.64%</u>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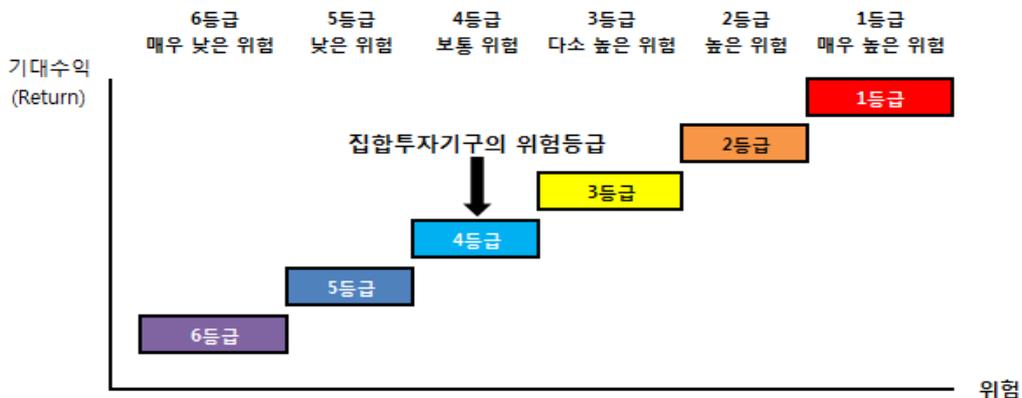
			<p>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6개의 투자위험 등급 중 <u>5등급</u>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u>또한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u></p> <p>(추가)</p> <p>※ '수익률 변동성' 이란?  <u>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을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수치로써,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률 변동성 값이 클수록 투자신탁의</u></p>	<p>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6개의 투자위험 등급 중 <u>4등급</u>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p> <p><u>이 위험등급은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제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을 고려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분류 하였으며, 판매 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u></p> <p>※ '수익률 변동성' 이란?  <u>수익률 변동성은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math>\sqrt{250}</math>)를 곱해 산출한 97.5% VaR 모형을 사용을 의미합니다. (표2)</u></p>
--	--	--	---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위험은 커집니다. (표1) ※ 투자위험등급분류 기준표 (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표3) <신설>	※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 (97.5% VaR모형 사용) (표4) ※ 펀드 위험등급 변경 내역 (표5)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아니오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신설>	(10) 환매 가능 여부 및 환 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중도환매를 허용하는 투자신탁입니다.(표 6)

(표 1)



(표 2)



(표3) 투자위험등급분류 기준표(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표4)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모형 사용)

등급	1(고위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sqrt{250}$ )를 곱해 산출

(표5) 펀드 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위험등급	변경사유
2016-07-02	3 등급->4 등급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변경
2018-10-02	4 등급->5 등급	펀드 결산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2020-10-08	5 등급->4 등급	펀드 결산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2023-09-26	4 등급->5 등급	펀드 결산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2024-10-04	5 등급->4 등급	펀드 결산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표6)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	-	○

# 정 정 신 고 (보 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집합투자규약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 년 4 월 17 일

3.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사항 반영	①~③ (생략) 1~6. (생략) 7. 종류 S 수익증권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u>  8. (생략) 9. 종류 S-P 수익증권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u>	①~③ (현행과 동일) 1~6. (현행과 동일) 7. 종류S 수익증권 :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종류S-T 및 S-P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u>  8. (현행과 동일) 9. 종류 S-P 수익증권 : <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종류 S-T 및 S-P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u>

		<p>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 투자증권</p> <p>10. <u>종류 S-I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 원 이상인 고액투자자</u>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p> <p>11~15. (생략)</p>	<p>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u>다른 종류[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u></p> <p>10. <u>종류 S-I 수익증권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종류 S-T 및 S-P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고액투자자</u>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p> <p>11~15. (현행과 동일)</p>
[부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